

서울특별시 공고 제 1156호		공공이사	1972년 2월 21일	서울시
K.S 표시검지 처분공고		담당자	김재삼	법무담당자
공업표준화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모양 제29조 제2항		주	김병만	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.S (한국공업규격) 표시검지 처분 하얏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 한다				
1972. 2. 21				
서울특별시 감				
허가번호	제 1156호			
허가일자	75. 9. 26			
제출업체명	(주) 장안공업사			
대표자	장 병 만			
소재지	서울 도봉구 미아동 163-3			
품 목	방수 소켓			
규격번호	KSC 8316			
처분기간	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당시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 까지			
처분 사유	KS 규격 미달			
(제3안)				
수신	서울 도봉구 미아동 163-3 (주) 장안공업사 대표 장병만			
제 목	동 건			
1. 당시 KS 사후관리 공관검사 결과 KS 기준 미달로 판정된 품목에 대하여 공업표준화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운영모양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별첨 공고 내용과 같이 표시검지 처분 하얏 2. 처분 기간중에는 동 품목에 대해 K.S 표시를 하얏 판 것이며 처분 사유가 개선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증빙자료 첨부 행정처분 해제 신청서를 당시에 제출 하얏기. () 관련 니다 . . .				

청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

(제 4 안)

수신 공업진흥청장

참조 표준과장

제목 동 건

당시 관내 KS 표시품 생산업체인 (주) 장안공업사에
대한 사후관리 공장검사 제품외부 시험결과 KS 기준 미달로
판명되어 별첨 공고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보고 합니다
청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

(제 5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공고 증부

당시 공고 제 호를 증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
바랍니다.

청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

수신처 나그-10, 상공부, 조달청, 국방부조달본부

(제 6 안)

수신 문화공보관

발신 공업과장

제목 시보 게재 의뢰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를 증부 하오니 시보에 게재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청부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1부 끝